

제292회 미추홀구의회 (정례회)  
2025. 12. 5. (금)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박수연 의원 대표 발의】



의회운영위원회  
[전문위원 오세진]

#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검토경위

○ 발 의 자: 박수연 의원 외 5명

※ (공동발의자) 김태계, 장규철, 이선용, 배상록, 이관호 의원

○ 발의일자: 2025. 11. 11.

○ 심사일자: 2025. 12. 5.

## 2. 제안이유

○ 경조사 휴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생일휴가 신설을 통해  
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 
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생일휴가 신설(안 제12조제9항, 1일)

나.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(안 별표3, 10일→20일)

## 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개정 필요성 검토

- 본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에게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근 공직문화의 흐름에도 부합하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
### ○ 조문 검토

- 안 제12조(특별휴가)제9항 생일휴가 신설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, 현재 인천시 6개 지자체\*에서 생일휴가(1일)를 시행하고 있음.

\* 중구('24.12.27), 연수구('24.12.23), 부평구('24.12.30), 계양구('25.9.26), 서구('24.9.23), 강화군('25.5.16)

- 안 별표 3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(10일→20일)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### ○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, 직원 복리 증진과 일·가정의 양립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 관계법령 발췌사항

### 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의8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<이하 생략>

### 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」

#### 경조사 휴가일수표 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